

#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용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	제 1369호
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28.

발 의 자 : 이용국, 편삼범, 이연희,  
이정우, 김옥수, 조길연,  
홍기후, 이해선, 김석곤,  
정광섭, 김민수, 고광철,  
안장현, 이철수, 지민규,  
김응규, 윤희신, 주진하,  
김선태, 이재운, 박기영,  
이현숙, 유성재, 박정수,  
전익현, 정병인, 박정식,  
윤기형, 김복만, 박미옥,  
신영호, 이종화, 구형서  
의원(33인)

## 1. 제정 이유

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급증으로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 증가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, 배달종사자들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한 배달 문화를 확립하고 배달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도지사의 책무(안 제4조)
- 다. 배달사업체의 책무(안 제5조)
- 라. 배달종사자의 책무(안 제6조)
- 마. 실태조사 및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(안 제7조)
- 바. 사업체 평가 및 인증(안 제8조)
- 사. 배달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(안 제9조)

### 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(법률 제20043호, 2024. 1. 16.)
- 나. 성별영향평가 : 별도 개선 사항 없음(2025.3.24., 여성가족정책관)
- 다. 부패영향평가 : 부패발생 요인 없음(2025.3.28., 감사위원회)
- 라. 규제심사 : 행정규제 없음(2025.3.19., 정책기획관)
- 마. 비용추계서

## 충청남도배달종사자안전및근무환경개선지원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배달사업체(이하 “사업체”라 한다)”란 배달을 통하여 음식 또는 식품류를 판매하는 사업체 및 이와 관련한 배달대행사를 말한다.
2. “배달종사자”란 사업체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안전사고”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가. 배달종사자 및 충청남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

나. 사업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배달종사자에게 발생한 질병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배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사업체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사업체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·감독하고, 배

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사업체의 책무)** ① 사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로 도민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
2. 「도로교통법」 준수 및 안전운행,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
3.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
4.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

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배달종사자의 책무)**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안전보호 장구의 착용 및 관리
2. 교통법규 준수

② 배달종사자는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실태조사 및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)** ① 도지사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사업체 평가 및 인증)** ① 도지사는 사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및 근무환경 우수성을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체를 평가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체계, 근무환경 개선 노력, 복지제도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

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인증을 획득한 사업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
**제9조(지원 사업)** ① 도지사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제공
2.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
3. 배달종사자 편의를 위한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및 배달 관련 소모성 장비 설치 지원
4. 배달종사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 상담 프로그램 운영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체와 배달종사자 또는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규

□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[법률 제17911호, 2021. 1. 26., 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활물류서비스”란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·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, 포장, 보관,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2. “생활물류서비스산업”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3. “생활물류서비스사업”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 - 가. 택배서비스사업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,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
  - 나.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,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(이하 “드론”이라 한다) 또는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(이하 “실외이동로봇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
4. “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”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.
  - 가. 택배서비스사업자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 사업을 등록한 자
  - 나.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: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

5. “영업점”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,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,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.
6. “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”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택배서비스종사자: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,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- 나.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: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7. “생활물류시설”이란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, 하역, 분류, 보관, 배송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,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·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(이하 “물류취약지역”이라 한다)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 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,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·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
2.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,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컴퓨터 등 시설 설치·개선
3.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,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·단지의 조성
4.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
5.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
6.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# 비 용 추 계 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안 제7조(실태조사 및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)
  -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\_ 비용추계
- 안 제8조(사업체 평가 및 인증)
  - 사업체 평가 및 인증을 위한 비용수반 \_ 비용추계
- 안 제9조(지원사업)
  - 안①항 1,2,4호 사업은 기 추진사업 \_ 비용 미발생
  - 안①항 3호 사업의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어려움 \_ 비용추계 곤란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사업명	2025년 예산액(도비)	비고
계		134,900	
일자리기업지원과	유인쉼터, 무인쉼터 임차료 및 공공요금 및 제세	78,900	
	안전물품 등 구입	48,000	
	노동교육 수당 및 상담(노무, 세무, 재무) 수당 등	8,000	

자료 : 2025년 본예산 예산서(부기명 기준)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 가. 대상

- 안 제7조(실태조사 및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)
- 안 제8조(사업체 평가 및 인증)

## 나. 추계의 전제

### 기본·공통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
(※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)
- 물가상승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

### 추계 대상별 전제

- 안 제7조는 실태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며 하며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(※자치행정과 인권실태조사 40,000천원 단가 준용)
- 안 제8조는 사업체의 평가 및 모니터, 인증을 위한 유사사업으로 청년정책관 ‘청년일자리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(6,503천원) 사업 적용

## 다. 추계 결과

- 실태조사 및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(안 제7조) ≙ 38,135천원
  - 연간비용 ≙ 7,627천원
  - 세부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과목	금액	산출내역
학술 연구용역	계	38,135	
	책임연구원 인건비	11,118	3,706천원×1명×3개월 = 11,118천원
	연구원 인건비	8,523	2,841천원×1명×3월 = 8,523천원
	연구보조원 인건비	11,394	1,899천원×2명×3개월 = 11,394천원
	자료수집비	3,600	30천원×4명×30일 = 3,600천원
	기타비용	3,500	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

### [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]

- 산출근거: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[행정안전부 계약예규]
- 연구용역기간은 3개월, 연구원 인건비 4인, 자료수집 및 기타비용으로 구성함(기타비용은 인건비 및 자료수집 비용의 10%를 산정함)
- 자치행정과 인권실태조사 40,000천원 수준내 용역 단가 추계

### - 연가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5)	2차년도 (2026)	3차년도 (2027)	4차년도 (2027)	5차년도 (2029)	계
세출	실태조사 개선계획 (안 제7조)		38,135	-	-	-	-	<b>38,135</b>

[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] 실태조사는 매 5년마다 수립 하며, 개선계획은 매년 부서 자체 수립

### ○ 사업체 평가 및 인증(안 제8조) ≍ 32,515천원

- 연간비용 ≍ 6,503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5)	2차년도 (2026)	3차년도 (2027)	4차년도 (2028)	5차년도 (2029)	계
세출	사업체 평가 및 인증 (안 제8조)		6,503	6,503	6,503	6,503	6,503	<b>32,515</b>

[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] 청년정책관 2025년 ‘청년일자리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’ 6,503천원  
단가 적용(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회의 : 4,050천원, 청년 일자리 사업 담당자 워크숍 : 2,453천원)

### ○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70,650천원의 비용이 발생 (연평균 14,130천원) 할 것으로 추정됨

○ 총비용 ≙ 70,650천원(연평균 14,130천원)

(단위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5)	2차년도 (2026)	3차년도 (2027)	4차년도 (2028)	5차년도 (2029)	계
	세입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실태조사 개선계획 (안 제7조)	38,135	-	-	-	-	38,135
	사업체 평가 및 인증 (안 제8조)	6,503	6,503	6,503	6,503	6,503	32,515
	소계(b)	44,638	6,503	6,503	6,503	6,503	70,650
□ 총 비용(b-a)		44,638	6,503	6,503	6,503	6,503	70,650

3. 기타 협의사항 등: 해당없음

4. 작성자

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(budget20@korea.kr)